

약관공시사항

□ 기본사항

개정일	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25-06-11	2025-08-01	판매중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 : 여신거래약정서

해당약관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여신 개시일	(추가)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추가) 201 년 월 일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여신기간만료일 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추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추가)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한도약정)일 □20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한도약정)일로부터	년	개월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삭제)	()%			
	<input type="checkbox"/> 변동 (삭제)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가산금리() %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동주기:()개월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2.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이내로 적용합니다. 3.연체가산금리는 ()%를 적용합니다.				

(추가)	
여신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계 특 약	적립신탁대출에 대하여 관련 월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추가)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를 제3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한도약정수수료/한도미사용수수료	택1	<input type="checkbox"/> 여신금액 x ()% x 약정기간(일) x 365(윤년은366일)를 제7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한도미사용금액 x 미사용수수료율 x 운용기간(일)/365(윤년은366)를 제8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신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개월동안 거치하고, ()년()월()일부터 매()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한도대의 경우 분할대출 건당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삭제)

- ② 인출가능 기간을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로 합니다.
- ③ 한도거래의 경우 인출가능 기간내에서 1회의 대출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내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⑥ 여신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하되, 해당 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직전영업일로 하며, 또한 월력상 해당 이자 납입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달 마지막 영업일로 합니다.

(추가)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CD수익률, AAA등급 금융채의 기간별 유통수익률 등을 의미하며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TERM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Compounded RFR,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등 각국의 공인기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가. CD수익률(91일물)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공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은행은 CD수익률 산출중단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을 안내하고, 고객과 합의하여 CD수익률을 아래의 대체금리 중 하나로 전환합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CD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3개월 은행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등급)노스프레드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기타 대체금리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금리(예:COFIX, CP(A1,91일), KORIBOR, KOFR 등)

나.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입니다.

다. TERM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은 미국 CO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는 미국 달러의 무위험 기간물 금리입니다.

라. Compounded RFR는 주요국이 채택한 통화별 통화별 무위험지표금리값을 이자계산기간 해당일에 고시되는 날의 무위험지표금리를 사후적으로 복리 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5영업일 전의 값을 적용하는 (5 days Lookback, without observation shift) 방식을 적용합니다.

통화	무위험지표금리(RFR)	산출기관	Compounded RFR (RFR기반 복리산출금리)
USD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FRB 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이자계산기간동안 통화별 RFR을 기준으로 일 복리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계산에 사용되는 각 고시일의 RFR은 그 고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의 값을 적용
JPY	TONA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BOJ (Bank of Japan)	

마.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은 EMMI(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가 고시하는 유럽은행간 EUR거래금리입니다.

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아래의 적용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상기 제1항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 직전 영업일에 고시한 최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2. 상기 제1항 제2호의 라.목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 5영업일 전 일자가 이를 복리 시작일인 지표금리

3. 상기 제1항 제2호의 마.목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 2영업일 전에 고시한 최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③ 제1항 제2호 라.목의 Compounded RFR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중도상환 이율은 중도상환일자의 이전 변동주기 상당일(이전 상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 5영업일 전 일자가 이를 복리 시작일인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사후복리 예시>

2025.2.11:3개월 Compounded RFR 사용해서 여신약정 시, 적용이율은 2025.2.11.의 5영업일 전 일자인 2025.2.4.부터 2025.5.4 까지 기간동안 사후복리 된 이율을 적용

<p>(추가)</p>	<p>제3조 중도상환 수수료 ①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당초 약정한 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중도상환원금”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원금으로 하며 분할 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원금을 포함합니다. ③ “잔존일수”(상환일에서 여신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여신개시일에서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④ “대출기간”은 여신개시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여신기간 만료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⑤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여신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⑥ 외회대출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수수료를 원화로 정수할 때에는 상환시점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⑦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원리금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합니다.</p>
<p>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적립식신탁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4조 지연배상금 ① (현행과 동일)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한도거래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기재생략)</p>	<p>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현행과 동일)</p>
<p>제4조 감액·정지 ① (기재생략) (추가)</p>	<p>제6조 감액·정지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고 조달 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p>

<p>②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p>	<p>④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p>										
<p>(추가)</p>	<p>제7조 한도약정 수수료 ① 한도거래 여신을 약정할 때 제1조에서 정한 한도약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약정 한도 미사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제1조의 약정 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약정 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③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 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제5조 약정 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8조 약정 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에서 정한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약정 한도 미사용금액 및 한도사용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한도미사용금액은 운용기간 중 '약정 한도평잔'에서 '여신평잔'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 '약정 한도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3. '여신평잔'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인출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4. '한도사용율'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을 약정 한도평잔으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산출합니다. ③ 미사용수수료를 <table border="1" data-bbox="1064 662 1944 715"> <thead> <tr> <th>한도사용율</th> <th>20%미만</th> <th>20%이상~40%미만</th> <th>40%이상~70%미만</th> <th>7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미사용수수료율</td> <td>연 0.50%</td> <td>연 0.30%</td> <td>연 0.10%</td> <td>면제</td> </tr> </tbody> </table> ④ 운용기간 및 지급시기 1. 여신개시일로부터 매 () 개월을 운용기간으로 계산하여 운용기간이 끝나는 주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2. 미납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 개별여신 실행일에 지급합니다. 3. 기한연장 또는 약정해지시에는 기한연장일 전일 또는 약정해지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수수료를 기한연장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며, 약정일 당일 해지시에는 당일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한도미사용수수료 납입 지연시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한도사용율	20%미만	20%이상~40%미만	40%이상~70%미만	70%이상	미사용수수료율	연 0.50%	연 0.30%	연 0.10%	면제
한도사용율	20%미만	20%이상~40%미만	40%이상~70%미만	70%이상							
미사용수수료율	연 0.50%	연 0.30%	연 0.10%	면제							
<p>제6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기재생략)</p>	<p>제9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현행과 동일)</p>										
<p>제7조 약속어음 제공의무와 보충권 수여 ① 어음대출의 경우, 액면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한도거래 및 1년초과대출의 경우,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제9조에 의한 환매채무 발생의 경우 포함)에는, 전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의한 보충권 행사시 어음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p>	<p>(삭제)</p>										
<p>제8조 상환통화 및 환율 (기재생략)</p>	<p>제10조 상환통화 및 환율 (현행과 동일)</p>										

제9조 담보·보험 (기재생략)	제11조 담보·보험 (현행과 동일)
제10조 담보권 설정 (기재생략)	제12조 담보권 설정 (현행과 동일)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기재생략)	■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현행과 동일)
제11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기재생략)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현행과 동일)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제14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추가)	제15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 ③ 용도의 유용 1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추가)	제16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제17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동일)